

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# 심 사 보 고 서

의안번호	2203
------	------

2017. 11. 29.  
기획경제위원회

## I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7년 10월 31일, 박진형 의원

나. 회부일자 : 2017년 11월 1일

다. 상정결과 :

【서울특별시의회 제277회 정례회】

- 제11차 기획경제위원회(2017.11.29)상정, 제안설명, 질의 및 답변, 토론, 의결(원안가결)

## II. 제안설명의 요지(박진형 의원)

### 1. 제안이유

- 「서울특별시 미래혁신기술 진흥 조례안」 발의에 따라 「서울특별시 전

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」중 중복 예상되는 조항 삭제

## 2. 주요내용

- 산학연정책위원회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20조의2항 삭제)

### Ⅲ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윤병국)

#### 가. 개정안의 개요

- 본 개정안은 「서울특별시 미래혁신기술 진흥 조례안」의 발의에 따라 서울특별시 혁신성장위원회로 산학연정책위원회와 지식재산위원회가 통합되어 산학연정책위원회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임.

#### 나. 산학연정책위원회의 운영 현황

- 「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」는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체계적인 재정·행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.
- 서울시는 지역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산업발전을 위한 기업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며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협력사업을 추진함.
  - 협력사업은 기업의 수요와 미래의 산업발전에 부응하는 인력의 양성, 새로운 지식 및 기술의 창출·확산을 위한 연구·개발, 기업 등으로의 기술이전 및 산업자문, 과학기술개발의 증진 및 신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술기반의 구축 등을 의미함.
- 서울시는 산학연정책위원회를 통하여 협력사업의 기획·평가 및 관리

등 협력사업의 전반적인 심의·조정을 수행하도록 하고 서울시의 경제기획관과 서울산업진흥원의 대표이사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외부전문가들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고(제20조의 2) 현재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음.

(붙임자료에 위원회 명단 참조)

## 다. 종합의견

- 현재 발의 중인 ‘서울특별시 미래혁신기술 진흥 조례안’에 따르면 미래혁신기술 진흥 주요 정책 및 계획 등에 대한 심의·자문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혁신성장위원회를 설치하고 혁신성장위원회의 기능에 산학연 협력체계 및 기반구축 등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.

**제4조(서울특별시혁신성장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사항)** ① 시장은 미래혁신기술 진흥을 위한 주요정책 및 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자문하기 위하여 시장 직속으로 서울특별시혁신성장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자문한다.

1. 미래혁신기술 진흥을 위한 주요정책 및 계획의 수립·조정에 관한 사항
2. 과학기술혁신 및 인력육성 등에 관한 사항
3. 미래혁신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발전 방안에 관한 사항
4. 미래혁신기술 진흥을 위한 연구개발지원사업 및 미래혁신기술 공공실증사업의 기획·평가·사업규모 등 시행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
5. 산학연 협력체계 및 기반구축 등 활성화에 관한 사항
6. 기술기반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
7. 지식재산 관련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
8. 그 밖에 미래혁신기술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- 따라서 ‘서울특별시 미래혁신기술 진흥 조례안’이 제정된다면 산학연 정책위원회는 혁신성장위원회에 기능적으로 통합되며 「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」에서 산학연 정책위원회 관련 규정인 제20조 제2항의 삭제가 필요함.
- 혁신성장위원회를 신설하고 산학연정책위원회와 지식재산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은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정책적 수요에 대응이라는 점에서 이해될 수 있음.
- 하지만 혁신성장위원회가 서울시장이 공동위원장이고 경제진흥본부장, 서울산업진흥원 대표이사,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는 큰 규모의 자문기구라는 점에서 산학연정책위원회의 지역적인 기능까지 모두 수행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어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방안을 강구하여야 함.

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「없음」

V. 토론요지 : 「생략」

VI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

(재적위원 11명, 참석위원 7명, 전원찬성)

VII. 소수의견 요지 : 「없음」

VIII. 기타 필요한 사항 : 「없음」

#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박진형 의원 (대표)발의)

의안 번호	2203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17년 10월 31일

발 의 자 : 박진형 의원(1명)

찬 성 자 : 김제리, 허기희, 유찬종, 김태수,  
성중기, 장인홍, 김구현, 이순자,  
김용석(서초), 진두생 의원(10명)

## 1. 제안이유

- 「서울특별시 미래혁신기술 진흥 조례안」 발의에 따라 「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」 중 중복 예상되는 조항 삭제

## 2. 주요골자

- 가. 산학연정책위원회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20조의2항 삭제)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해당사항 없음.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- 다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0조의2<삭제>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          행	개           정           안
<p><u>제20조의2(산학연정책위원회의 설치·운영)① 협력사업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조정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서울특별시산학연정책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<u>1. 협력사업의 기획·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</u></li> <li><u>2. 협력사업의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</u></li> <li><u>3. 협력사업의 우선순위 및 사업비 규모의 조정에 관한 사항</u></li> <li><u>4. 협력사업의 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</u></li> <li><u>5. 협력사업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</u></li> <li><u>6. 그 밖에 협력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</u></li> </ol> <p><u>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하고,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<u>1. 당연직위원 : 시 창조경제기획관,</u></li> </ol>	<p><u>&lt;삭 제&gt;</u></p>

서울산업통상진흥원 대표이사

2. 위촉직위원 : 서울특별시의회 의  
원 및 기업인·언론인·교수 등 사회  
각계의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  
촉하는 자

③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 
하되,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  
다만, 위촉직위원중 서울특별시의회  
의원은 위촉당시에 소속된 상임위원  
회의 재임기간으로 한다.

④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  
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  
집한다.

⑤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  
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  
성으로 의결한다.

⑥위원장 및 위원은 다음 각 호의  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  
건의 심의·조정에서 제척된다.

1. 당해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 
있는 경우

2. 당해 안건의 관계자와 같은 기관  
에 소속된 경우

3. 당해 안건의 관계자와 친족관계  
에 있는 경우

⑦위원장 및 위원이 제6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·조정에서 회피할 수 있다.

⑧시장은 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⑨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-----  
다만,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